

「주택저당채권 양수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 「주택저당채권 양수규정」

2. 개정 이유

- ☐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관계부처합동, '26.4.1일) 등에 따라 대출금의 용도와 유용자 등에 대한 가계대출 제한 사항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 금융기관 사업자대출의 용도를 위반하거나 주택처분 약정 등 추가 약정을 위반한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경우 보금자리론 이용을 제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6년 7월 1일(수) 18시 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금융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4층(정책금융처)
- 담당자(이메일) : 차장 윤현기(smile@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92
- 팩스번호 : 0505-036-0566

붙임 주택저당채권 양수규정 개정안 전후대비표 1부. 끝.